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교육부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이 책자는 교육부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전 자료를 기초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유학생들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 기관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문화와 규범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에서 온 분도 있고, 사뭇 다른 나라에서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만 머물거나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의 새 학기를 시작하는 분, 또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로 새롭게 한국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나 문화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회나 문화를 얼마나 친숙하게 여기든, 어떤 이유로 그 곳에서 살게 되었든, 그런 것들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길 바라지만,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책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특히 국내 대학에서 혹시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조직과 여러분이 속한 학교는 여러분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희롱·성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겨 문제를 일으킨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 학교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응급키트로 이 책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위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유학비자 또는 일반연수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 받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가능한 언어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혜택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학교 내 지원센터 등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어 콜센터 서비스(Tel: 033-811-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

대한민국의 국내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유학생은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한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학위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시간제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01	▪ 캠퍼스 생활에서의 안전	08
02	▪ 친한 관계에서의 안전	10
03	▪ 연인 관계에서의 안전	14
04	▪ 스토킹 범죄	17
05	▪ 디지털 성범죄	18
06	▪ 도움 받기	20

캠퍼스 생활에서의 안전

대학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학 안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과 조교 사이, 학생과 교수 사이, 학생과 교직원 사이, 그리고 교수들 사이에서나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저마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자체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은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됩니다. 신분(교수나 직원, 학생)이나 국적(한국이나 외국)에 상관없이 해당 대학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므로 사건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이 학교 안팎의 관계나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여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주변인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대학 내에서 권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강압·위협·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된 성적 행위, 미수에 그친 성적 행위, 또는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이나 접근 등 성적으로 잘못된 언행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생활(수업)>

대학에서 수업 중에, 또는 수업과 관련한 학교생활(면담, 학과행사 등) 중에 학생·조교·교수·교직원 중 일부가 권력이나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위협하거나 속여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성인식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위자 교수(조교, 교직원) ➔ **피해자** 학생

» 수업 중 수업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또는 수업과 관계없는 성적 발언을 다수의 학생 앞에서 하거나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 지도를 빌미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너는 성형(가슴) 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남자친구가 생긴다.”

“실기 수업 중 ‘허벅지를 주물러 달라.’, ‘뒤에서 안아봐라.’

“OOO은 야하게 웃을 입었네. 밤일 나가나?”

“이성과 교제하는 이유가 잠자리 때문이 아닌가?”

“이성에게 유혹을 받은 적 있나? 어떤 식으로 받았나?”

- » 불필요하게 사적 연락을 취하는 경우 또는 취업·진로·장학금·상담·수업·연구 등 학업을 빌미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집에 돌아온 지금도 네 생각이 난다”, “너와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했다.”

“나하고 데이트하면 내 과목에서 A를 주고, 추천서도 써 줄게.”

“함께 바다에 가자.”, “모텔에 가본 적 있어?”, “손잡아 보자.”

행위자 학생 ▶ 피해자 학생

- » 학과의 단체 대화방이나 조별과제를 위한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외모 평가를 하는 경우

“뺨치고 싶다.”

“OOO은 △△△이랑 어디까지 갔나?”

“OOO 몸매가 가장 좋더라, 얼굴은 □□□가 제일 예쁘지.”

- » 성적인 메시지·영상물·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보도록 하는 경우

성희롱은 모두 처벌할 수 있나요?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들 중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의 내용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난 특정 상황과 맥락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성희롱 행위라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즉 피해자의 관점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문제시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도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주시시오.

친한 관계에서의 안전

대학에서는 수업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조별과제를 위해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친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가거나 소풍·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좀 더 친해지면 서로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나 모임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친한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지 않은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은 결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나 문화에서 온 사람에 대한 성적인 언행은 편견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이며 ‘한국의 문화’로 허용되는 성폭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문화’에서 허용되는 언행이라도 한국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국적이나 문화,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스터디 모임, 동아리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

- » 공공장소에서 무리 지어 타인에 대한 성적인 농담 또는 행동을 하거나 성적비하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임이나 만남에서 OO 사람들(특정 국가나 인종)은 데이트(혹은 하룻밤)를 제안하면 다 넘어 온다, OO 사람들(특정 국가나 인종)은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등과 같은 발언이나 표현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
 - 술자리에서 게임 중 무리한 벌칙(강제 입맞춤, 데이트 요청 등)을 강요하는 경우
 - 옆자리의 타인에게 무리하게 합석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나의 집 또는 친구 집으로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로 초대나 방문할 때 등

- » 원치 않는 상대가 나의 집에 놀러오겠다며 계속해서 초대를 강요하거나, 초대하지 않은 상대가 갑자기 놀러오려고 하는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공간과 다른 사람의 공간은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집에서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과제나 모임을 하는 것처럼 숙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들인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술자리 모임 끝에 집으로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거나 자고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학과 모임이나 환영회, 축제 등

-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고 말하며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경우
- “OOO랑 △△△은 참 잘 어울린다.”, “잘해봐라, 알고 보니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러브샷을 해봐라.”, “붙어앉아라.”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치 않는 상대와 커플로 만들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경우
-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춘다며 강제로 끌어안거나 옆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학업 상 가해자와의 분리나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황 증거(예: CCTV 영상, 증인, 녹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제3자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폭력(예: 강간,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신고전화: 112)에 신고하여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고 적시에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학교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반드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한 뒤에라도 학교의 보호를 받고 싶거나 학교에서 가해자에게 별도로 제재하기를 원한다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에 추가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스나 성관계를 맺은 경우,

-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너무 취해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사람은 성적 접촉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를 악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간이나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가 성립되었다면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말은 성범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종종 “그날 내가 너무 취했어.”라거나 “내가 자제했어야 했는데.”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범피해자가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 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는 통상적으로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는 반드시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서는 고용관계를 맺게 되며 이로써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위계나 위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성희롱 및 성적 접촉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 혹은 학교 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신고 전후에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학교에 요청하면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유학생도 내국인과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관련 증거가 없어지거나 시간의 경과로 기억의 소멸이나 변화, 입증의 어려움, 공소시효 만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의 보관기한은 한정적이고 몇 주 이내로 짧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꺼려지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걱정된다면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의 신고 센터(20~21쪽)를 참고하셔서 가능한 한 상담 또는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성희롱 관련 신고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에 있는 유학생 센터나 상담 센터에도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화 정말 이런가요?

Q 한국에서 술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일인가요?

A 대부분의 한국인은 여러분이 개인적, 의료적,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한국은 술을 좋아하지 않거나 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을 때 “싫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Q 학교행사 후 뒤풀이 참석은 필수인가요?

A 어떤 제안에 대한 거절은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공식 행사 후 추가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꼭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는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풀이에는 참석했지만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Q 술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남성이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이나 약자(학생, 후배)라는 이유로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불편하다면 불편함을 표현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술자리에서 술 게임은 꼭 필요한가요?

A 술 게임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술 게임을 제안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반드시 묻고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게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안전

연인 같이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트 관계에 있을 때 뿐 아니라 연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물리적), 심리·정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해결 과정이 힘들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데이트 폭력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이 강력 사건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를 매개로 성적 고충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통제

-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내 스케줄을 모두 통제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심하게 내거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라고 강요해요.
-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해요.

※ 통제가 점차 심해져 협박·감금·폭행 등 범죄행위로 이어질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폭력(범죄)

» 언어적, 정서적 폭력

-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 갈등의 원인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요.
- 나의 판단이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하라고 회유하거나 강요해요.
- 화가 나면 갑자기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해요.
- 헤어지자고 했는데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요.

» 신체적 폭력

-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언쟁이 생기면 나를 폭행해요.
- 식사하는 중에도 언쟁이 시작되면 그릇을 던지거나 음식을 엮어요.
-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해요.
-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꼬집거나 팔을 세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요.

» 성폭력

-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해요.
- 나와 했던 성적인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소문이 퍼졌어요.
-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았는데 지워달라고 해도 지우지 않아요.
-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요.
- 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계속 요구해요.
- 자취방 또는 숙박업소에 애인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성관계 장면을 나 몰래 촬영해요.

위에서 제시된 데이트폭력의 사례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는 학교 담당 기관 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 협박·감금·폭행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장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연인 관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5장을 살펴봐 주십시오.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스토킹 범죄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게 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반대로 이런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스토킹 대상인 피해자 및 동거인, 가족 포함

행 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하지 않은 아래의 행위

- 접근 및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SNS에 댓글을 다는 등의 온라인 접근행위
- 택배를 보내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 주거지나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 대응 및 처벌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법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외국인 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 어려운 내용은 대학교 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내에서 스토킹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면 학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인권센터)에 빠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학교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 센터, 인권 센터(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 유학생 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능숙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온라인 활동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조별 과제를 위해 온라인 회의를 하는 등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하거나 SNS를 통해 교류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법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들도 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동의 없는 촬영

- 화장실 내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
-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
-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

※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였다면 카메라를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불법촬영 행위자의 인상착의 및 휴대폰 기종 등을 기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및 재유포

- 성관계, 나체 등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상대방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허락 없이 유포
- 성적인 촬영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

※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재유포 하거나 비록 촬영에는 동의하였으나 유포를 허락하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유포 협박

- 연인 관계를 끝내자고 했더니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신체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

이런 경우도 범죄입니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행위 대응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삭제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영상물, 촬영물, 음성물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

- 사이버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평일 9~18시)



도움 받기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었다면 대학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사건가해자가 속한 대학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도움 받기

피해자는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도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분리 조치
가해자가 같은 학교 소속(학생, 교수, 조교, 교직원 등)인 경우 범죄 피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및 기타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인권센터), 상담 센터, 유학생 센터 등에 문의하십시오.
※ 유학생도 대학교의 일원이므로 대학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 밖 : 사법 당국과 정부 서비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범죄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경찰, 긴급 상황인 경우)

- 112에 전화를 걸어 범죄 피해나 목격 사실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 전화 통화 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전화기에 대고 '통역'이라고 말하십시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112에는 전화통화 대신 문자를 보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화 통화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휴대폰에 112 긴급신고 앱을 설치하면 긴급 상황에서 전화통화 없이 13개 이상의 다국어 지원 및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

http://www.mogef.go.kr/cc/wcc/cc_wcc_f001.do

1366은 전국에서 이용가능한 단일 특수전화로 성폭력 등을 이유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피해 상담 및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됩니다.



온라인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된다면 피해를 신고하고 사진 및 영상 삭제를 요청하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https://d4u.stop.or.kr/>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http://cyber-lion.com/>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

캠퍼스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

자문진

가나다순

양주애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팀장

진선애

한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최지나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